

#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7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97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의 매각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"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"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
- '95. 9. 22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제4호를 신설한 바 있으나
-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"공공기관의 범위"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
- 현행 개별법규에도 "공공기관"에 대한 통일된(확립된) 개념이 없어 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.

## 2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제4호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)를 "삭 제"

## 3.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 : 「 별 첨 」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「 별첨 」

5. 관련법규발췌 : 「 별첨 」

##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2 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